

필수유지업무 유지·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
노동조합	조합명	대표자	
	소재지 (전화번호)		
사용자	사업장명	대표자	
	소재지 (전화번호)		

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·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42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사업장 개요 2.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경위 3.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·운영수준,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. 그 밖의 참고사항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